

제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731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민

담당변호사 고경준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C이 피고를 대리하여 C의 원고에 대한 3,500만 원의 차용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고, 설령 C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고,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10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게 되므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가 있을 뿐인데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들고 달리 C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날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대리인으로 자칭하는 사람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자칭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인으로 자칭한 사람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C에게 D를 주채무자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제주시 E 전 3203㎡)에 설정된 F조합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C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한 외에 위임장 등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 본인의 보증의사 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이 원고가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